

의안번호	제 775 호
의결연월일	1996. 2. 10. (제 41 회)

의결 사항	의결 가결
----------	----------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 출 연 월 일	1996. 1. 7.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7775
--------	--------	------

제출연월일 : 1996. 1. 31.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사유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당초 상이급수 "1급내지5급"에서 "1급내지 6급"으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항)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18세이상 본인명의 등록차량으로 보철 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하면 면제하던 것을 나이제한 없이 장애인 본인명의 등록 및 부모·배우자 명의등록 차량도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면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함(안 제4조)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유료복지시설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 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함(안 제7조제7호)
-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 면제범위를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함(안 제12조제2항)
- 재산세 및 종토세 100분의50 감면대상 부동산의 감면기간을 당초 "5년간"에서 "최 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여 감면기간 계산의 논란여지를 없도록 하 였슴(안 제13조제1항 본문)

-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5년간 재산세 및 종토세 100분의50을 감면하는 규정중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까지 확대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중 개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진흥법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받는 대상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의2" 조항은 '95. 1. 5. 법령개정으로 "제29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의 범위에 분양·임대받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 하였슴(안 제13조제1항제4호)
- 소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배기량별 세액을 인상 조정함(안 제17조)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로 불필요한 별표1를 삭제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 도세정13400 - 804('95. 7. 7.)호 「시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 통보」
- 도세정13400 - 1258('95.11. 7.)호 「장애인자동차세감면조례개정안 송부」
- 도세정13400 - 1341('95.11.30.)호 「소형자동차세감면조례안 송부」
- 도세정13400 - 1361('95.12. 6.)호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달」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지정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제29조의2"를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설치 신고를 하거나 받은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질형자동차에 대한 감면)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 기 량	씨 씨 당 제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씨이하	10원	160원
2,500씨이하	12원	180원
3,000씨이하	12원	200원
3,000씨초과	15원	230원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_____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_____</p>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_____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_____</p> <p>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p>

현행	개정안
<p>제7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6.(생략)</p> <p><신설></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7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6.(현행과 같음)</p> <p>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②_____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제13조(농의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p> <p>3. 중소기업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주</p>	<p>제13조(농의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①—</p> <hr/> <hr/> <hr/> <hr/> <hr/> <p style="text-align: right;">최초과</p> <p>세기준일로부터 5년간</p> <hr/> <hr/> <hr/> <hr/> <hr/> <p style="text-align: right;">아니하</p> <p>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지정을 받은자와 _____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p> <p>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_____</p>

현행	개정안																																		
<p>진주체 및 참가업체</p> <p>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p> <p>제17조(궤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의한 승용자동차중 궤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p>	<p>_____</p> <p>4. _____ 제29조 제2항의 _____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임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_____</p> <p>_____</p> <p>제17조(궤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기량</th> <th colspan="2">씨씨당 세액</th> </tr>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원</td> </tr> <tr> <td>2,000씨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원</td> </tr> <tr> <td>3,000씨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65원</td> </tr> <tr> <td>3,000씨씨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원</td> </tr> </tbody> </table>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씨씨이하	10원	110원	2,000씨씨이하	10원	140원	3,000씨씨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초과	15원	200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기량</th> <th colspan="2">씨씨당 세액</th> </tr>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2,000씨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원</td> </tr> <tr> <td>2,500씨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원</td> </tr> <tr> <td>3,000씨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원</td> </tr> <tr> <td>3,000씨씨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30원</td> </tr> </tbody> </table>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씨씨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초과	15원	230원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씨씨이하	10원	110원																																	
2,000씨씨이하	10원	140원																																	
3,000씨씨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초과	15원	200원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씨씨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초과	15원	230원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급	수	상 이 등 급 분류 표	<삭 제>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